

個人所得稅收函數 推定

盧 基 星

本稿의 목적은 個人所得稅의 稅收豫測을 위한 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稅率構造를 가지므로 통계자료가 가능한 所得稅 種類別 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所得, 稅率構造, 稅率水準, 所得分配, 稅制(免稅點, 控除制度 등)를 說明變數로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綜合所得稅는 申告 및 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時差를 가지는 稅收函數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個人所得稅收의 所得彈力性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은 1.2~1.3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本稿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I. 序 論

本稿의 목적은 個人所得稅의 稅收豫測을 위한 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稅率

構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달리하므로 本稿에서는 소득종류별 稅收函數의 分離推定을 시도하기로 한다.

우리 經濟는 소위 3低現象이라는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1986~88년의 3년동안 경제 전체로는 급속한 성장과 國家財政의 측면에서는 연속적인 財政黑字를 시현하였다¹⁾. 그러나 一般會計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財政黑字의 발생, 즉 歲計剩餘金의 발생은 次期의 歲入豫算으로 계상되어 歲入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해 稅輕減 壓力을 유발하여 稅入減少와 財政

筆者: 本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院의 柳一鎬, 文亨杓 博士의 유익한 論評과 提案에 감사드리며, 또한 吳英秀 研究員과 朴恩姬 研究助員의 電算處理 및 原稿整理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1985~88년간 總財政收支와 歲計剩餘金으로 본 財政黑字는 각각 85년 669億원과 1,890億원, 86

支出의 縮小를 가져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財政黑字의 발생은 그 해 가능하였던 財政支出을 결과적으로 연기하게 하여 通期의 事業施行을 불가능하게 하고, 剩餘金의 발생

은 追更豫算 編成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歲入의 大宗을 이루는 租稅收入의 정확한 예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稅收推計는 世제개편에 따른 稅收效果 分析을 위해서 필요하다. 稅制改編으로 인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나, 급격한 세목별 비중의 변화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世제개편에 따른 稅收變動效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측이 필요한 것이다.

년 2,736億원과 5,512億원, 87년 1兆 8,064億원과 1兆 3,649億원, 그리고 88년 1兆 7,993億원과 3兆 3,050億원이었음(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0, 7 참조). 총재정수지는 歲計剩餘金과 약간 상이한데, 먼저 마감시기에 있어 총재정수지가 12월말 기준임에 비해 歲計剩餘金은 豫算會計法에 의거 익년도 1월 15일이 마감일임(政府計定 상호간 대체처리를 위한 收入·支出을 고려하기 위한 것임). 다음으로, 計定項目에 있어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데, 총재정수지에서는 실제로 入·출이 발생한 경우라도 借入金(발생, 상환), 前年度移越金, 融資金(발생, 회수), 國債發行(상환), 其他 融資性 支出, 預託金 등은 고려에 넣지 않는 항목임. 뿐만 아니라 財務部 豫算管理課에서 IMF 기준에 따라 작성·공표(6개월마다)하는 綜合財政收支와도 管理對象會計, 計定에서 차이가 있음. 종합재정수지는 보다 광의의 政府部門의 收支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比較優位가 있음. 따라서 當該年度 歲計剩餘金(일반회계대상)이 발생했다 하여 全體 政府部門 財政이 黑字라고 볼 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시 所得稅 稅收豫測은 여타 세목에서와 같이 段階的 接近法이라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²⁾. 첫째, 현행 방법은 t 년의 稅收를 예측하는 경우 예측시점이 $(t-1)$ 년의 中반이므로 $(t-1)$ 년의 실제 稅收規模를 알 수 없고, $(t-2)$ 년의 中반에 예측된 $(t-1)$ 년의 稅收展望值를 基準 稅收로 이용하므로 대단히 큰 豫測誤差를 가진다³⁾.

- 2) 車軋權(1983, pp. 23~25)과 經濟企劃院(1989, p. 72)에 나타난 段階的 接近方法에 의한 소득세 수 예측과정을 참조.
- 3) 최근 所得稅收를 비롯한 전반적인 稅收豫測의 正確度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여타국가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정확도의 향상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崔洸·李基煥(1985) 참조). 그리고 所得稅收의 豫算과 實績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 전체로는 실적이 예산에 비해 -12~30% 정도의 차이를 시현하고 있고, 1988년에는 무려 30%에 이르는 초과를 나타냈음. 1976년부터 보 고된 신고분과 원천분의 예산대비 결산규모를 각각 비교하면 申告分은 70년 中반 이후 실적이 예산을 하회하는 반면(1977, 78년은 26%) 1980년대는 1~23% 초과하였고, 源泉分은 실적이 예산을 상회하는 1980년(43%), 1988년(35%), 그리고 1989년(51%)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15%의 超過를 나타냈음(附表 1 참조).
- 4) 1982년도 소득세 신고분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稅收增加分 계산시 81년도 稅收展望值에다

둘째, 현행 방법에서 稅法改正效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세수의 自然增加分과 累進效果 등 계산에 적용되는 탄력성에 준하는 數值가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의 도출과정과 매년 변동여부 등에 관한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恣意的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고분 소득세수예측의 경우 稅法改正效果를 구하는 데 t 년과 $(t-1)$ 년에 유효한 稅法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은 $(t-1)$ 년의 것만을 적용하여 稅收豫測方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所得稅收推計의 實證研究은 南相祐(1986), 車軋

權(1983), 그리고 尹建永(1990)에서와 같이 稅收의 稅率적 變動을 調整한 稅收統計를 利用한 巨視分析(소득세 종류별 세수함수를 분리추정하지 않았음)이었거나, 朴宗淇(1975), Park(1972)에서와 같이 稅率變數를 도입하여 事業소득세, 부동산소득세, 배당이득세 등을 추계함에 있어 실제 法定稅率構造가 아니라 平均實效稅率을 利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稅收統計를 調整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법정세율구조는 변화가 없더라도 平均實效稅率이 變動될 수 있으므로 역시 稅收豫測의 正確性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데 유용한 稅收函數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즉, 통계자료가 가능한 所得稅 種類別 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소득, 세율구조, 세율수준, 소득분배, 세제(면세점, 공제제도 등)를 說明變數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綜合所得稅는 申告 및 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時差를 가지는 세수함수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81년 전산업성장률 27.5%를 곱함. 그리고 累進效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에다 24.29%를 곱하여 계산함. 源泉分의 경우 81년 稅收展望値에다 82년 전산업성장률 23.1%를 곱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계산하고, 累進效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에 54.17%를 곱하여 누진효과를 구함. 이것은 압목적으로 所得稅收의 소득탄력성이 1이고 累進效果는 세수의 자연증가분의 어떤 비율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보임.

5) 限界稅率 = $n_{T,Y} \cdot (T/Y)$

(T 는 稅收, Y 는 國民所得)

Prest(1962), Baas-Dixon(1974), Dorrington(1974), Anderson(1973) 참조.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II章에서는 稅收函數 推定의 이론적 모형을 時系列分析과 橫斷面分析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간략하게 검토해 본 후, III章에서는 所得稅收函數模型을 설정한다. IV章에서는 소득세수함수를 추정하는 데 앞서 우리나라의 所得稅制 變遷過程과 所得稅 收入構造를 살펴본다. 그리고 所得稅收函數를 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네가지로 나누어 추정해 본다. 마지막으로 V章에서는 所得種類別 稅收函數 推定結果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II. 既存의 稅收推計 研究

1. 既存 稅收推計研究의 背景

지금까지 세수추계연구의 대부분은 所得彈力性 推定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수의 소득탄력성추정은 거시경제학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稅制의 自動調節機能의 程度를 추정하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시도되었다. 自動調節機能의 정도는 租稅가 부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乘數의 差異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승수의 한 요소인 限界消費性向은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구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은 반면, 限界稅率은 다양한 세목과 각기 다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시적 실증분석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간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세수의 所得彈力性($n_{T,Y}$) 추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⁵⁾.

그리고 稅收의 所得彈力性 推定은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 후진국의 경제개발계획 기간중 재정지출을 전망하여 이를 충당할 稅收가 과연 충분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부족하다면 새로운 財源調達方案을 모색키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세수의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하면 세수추계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실무적 차원에서 歲入豫算編成時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既存 稅收推計研究⁷⁾

가. 時系列 回歸模型

기존의 稅收推計模型은 총체화된 통계자료를 이용한 巨視模型과,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으나 세목별로 약간 달리하는 稅目別 模型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자료의 巨視 및 微視에 의한 구분이지 근본적으로는 稅收入을 國民所得 또는 稅目別 課稅베이스의 함수로 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본고의 목적은 소득세수함수 추정에 있으므로 所得稅收 推計模型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所得稅收函數는 간단하게

$$T = f(Y, m, \dots) \dots\dots\dots(1)$$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稅收는 國民所得을 나타내는 Y , 稅率水準을 나타내는 m 등의 함수로 표시된다. 만약 稅率構造가 比例稅이면

$$T = mY \dots\dots\dots(2)$$

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所得稅率構造가 누진적인 것이 보통이므로 (2)식과 같이 모형을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回歸模型은 아래 (3)식과 같이 세수입을 국민소득만의 함수로 하여 所得彈力性을 추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log T = \alpha_1 + \alpha_2 \log Y \dots\dots\dots(3)$$

여기서 세수통계자료는 어느 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세수입에 미치는 여타 변수(稅制)들의 효과인 裁量의 效果를 原系列에 加減하여 國民所得의 변동이 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인 自動的 效果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原系列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① 不變稅率構造方法 ② 比例調整法 ③ 「더미」變數方法 ④ 「디비시아」方法의 네가지가 이용되는데, 이들은 각각 데이터 조정의 일관성 결여와 긴 시계열자료일 경우 조정의 어려움, 실제조정계열과의 괴리, 자유도의 축소, 세계변동효과와 불완전한 제거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렇게 볼 때 기존연구에서는 稅收推計模型間 正確性을 비교한 尹建永(1990) 외에는 模型開發의 試圖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민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한 稅收變動을 統計調整으로 반영한 것이었다⁸⁾. 이러한 방법은 消費稅나

6) Chand(1975)는 2次 經濟開發計劃(1971~75년)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를 위해 준비된 것임. p.3 참조.
7) 기존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盧基星(1990) 참조.
8) 통계자료조정에 의한 稅收의 所得彈力性 推定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稅收函數模型의 洗練化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 세수통계 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盧基星(1990) 참조. 尹建永(1990)에서는 조정된 세수통계를 이용하여, 본문 (3)식과 같은 탄력성 모형, (3)식에 시차를 둔 多項分布模型(PDL), 差

附加價值稅 등과 같은 比例稅의 경우나 모든 稅目을 합쳐 巨視的으로 추계할 때는 이용가능하지만 稅率構造가 누진적이고, 여러가지 공제가 허용되는 個人所得稅의 경우에는 세율과 누진구조 외에 所得水準別 人口分布, 徵稅行政의 改善, 控除規模의 크기 등에 의해서도 세수가 변동하므로 이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原系列에 加減 調整하는 稅法改正效果도 역시 추정되어야 하는데, 이의 추정이 부정확하다면 세수추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稅法改正效果의 精確한 推定이 아울러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橫斷面 模型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과 함께 세수 추계보다는 所得彈力性 推定에 더 중점을 둔 橫斷面分析도 시도되었다. 이 방법은 시계열 모형에서와는 달리 稅收統計調整의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매년 탄력성의 값이 변한다는 약점도 함께 가진다.

橫斷面 分析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 Hutton-Lambert(H-L)(1982)와

OECD(1984)이다. H-L(1982)는 소득계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탄력성을 가중 평균하여 구하였다. 그들의 소득탄력성 계산 공식은 전체세수, 그룹별 공제액 그리고 그룹별 소득과 같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OECD(1984)는 한 연도의 소득계급별 限界稅率 그리고 平均稅率을 구하여 이 둘의 비율로서 彈力性을 구하고, 이들을 가중평균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Hutton and Lambert(1980)는 累進個人所得稅制 아래서의 稅收의 所得彈力性이 항상 1보다 크고, 이것은 세율의 누진구조와 소득공제 제도에 의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였다⁹⁾. 마지막으로 Wellink(1974)는 1967년 네덜란드의 소득세자료를 이용하여 所得稅收의 所得彈力性을 계측하였는데, 「파레토」所得分布函數와 累進稅率構造를 나타내는 함수를 각각 추정하여 추정된 계수들을 稅收公式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H-L과 OECD 방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分模型, 그리고 差分模型에 시차를 둔 模型(DPDL)의 네가지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함. 이 결과 소득세수 예측의 경우 DPDL이 가장 豫測力이 높았다고 함. 그러나 소득세 종류별 세수 함수의 분리추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조정된 통계를 이용하였음.

$$9) n_{T,V} = 1 + \left[\sum_{j=1}^m (m_j - m_{j-1}) \beta_j N_j + \sum_{j=0}^m m_j A_j \right] / T \geq 1$$

T : 所得稅收

N_j : 계급에 속하는 課稅者數(j는 소득계급을 나타내는 하첨자)

A_j : 所得控除額

n : 所得稅收의 所得彈力性

β_j : 각 계급의 가장 낮은 所得金額

p : 最高稅率適用 所得階級

m : 限界稅率

III. 個人所得稅收 推計模型

1. 模 型

稅收推計를 위해서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것이 稅收函數이다. 먼저 세수함수를 연립방정식체계 또는 단일방정식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租稅收入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는 巨視經濟理論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稅收는 國民所得과 稅制의 함수이고, 국민

소득은 다시 稅制의 함수이다. 따라서 연립방정식체계를 설정하여 여타 巨視經濟變數와 연결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세 한 세목만을 다루고 있고, 단기적으로 세제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므로 單一方程式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稅收函數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經常稅收規模에 있고, 이것이 직접 政策立案 및 歲入豫算編成과 같은 실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함수 추정작업이 결국에는 稅收展望과 연결되므로, 전망의 용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時系列回歸模型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稅制變動의 效果를 기존의 데이터調整法에 의하지 않고 稅制變動을 수량화하여 설명변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이상의 稅收函數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정해지면 세수함수의 回歸模型은 간단히 설정될 수 있다.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 모형을 수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所得稅(T)는 기본적으로 課稅베이스가 되는 所得(Y), 所得稅制(TS)(공제제도, 세율구조, 감면제도, 세액공제제도, 징수제도 등)의 함수이고 여타 변수인 所得分布 및 所得分配狀態(ID)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T = f(Y, TS, ID, \dots) + \varepsilon \dots (4)$$

로 나타낼 수 있다(여기서 기간을 나타내는 하첨자는 생략함). ε 는 교란항을 나타낸다.

소득이 증대하고 세율구조가 더 누진적이고 감면조항이 축소되면, 다른 사정이 불변일 때 稅收는 늘어나고 稅額控除額과 免稅點이 인상되면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행

정의 개선으로 所得捕捉率이 높아진다면 역시 稅收가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稅前 소득분배가 더 개선되고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累進稅率構造 아래서는 稅收가 減少할 것으로 기대된다. 所得種類別 稅收函數推定은 그에 상응하는 과세베이스, 세율구조, 감면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을 적절히 이용하고 관련 설명변수를 적절히 첨삭함으로써 가능하다. (4)식의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선형, 로그선형 등의 형태로 적절하게 변형될 수 있고, 통계자료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所得稅制變動을 수량화하느냐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2. 稅制變動의 數量化

세수함수 추정시 가장 어려운 작업은 裁量的 稅收變動分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연구는 재량적 변동분을 統計調整法과 「더미」변수를 이용한 計量的 方法으로 제거하여 原系列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제개편과 같은 세율구조의 변동에 따른 稅收變動을 事前的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稅制變動을 수량화하여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稅收模型에 세제를 반영하는 설명변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한다. 소득세제의 경우, 핵심은 累進構造이다. 누진구조는 공제제도와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진다. 같은 稅率構造 아래서 면세점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같은 면세점 아래서 세율구조가 더 누진적일수록 稅制가 더 누진적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所得稅制를 이 둘로 크

계 나누어 稅收函數에 포함시킨다. 면세점은 기존자료가 가능하므로 이를 회귀분석시 이용하고, 稅率構造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율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回歸分析하여 추정된 계수를 代理變數로 하였다.

$$T_i = AY_i^{\alpha_1} \rightarrow (\ln T_i = \alpha_0 + \alpha_1 \ln Y_i) \dots (5)$$

i : 소득계급, $\alpha_0 = \ln A$

여기서 Y_i 와 T_i 는 각각 i 계급의 課稅標準과 算出所得稅額을, 그리고 α_0 , α_1 은 계수를 나타낸다. 소득계급이 10구간 미만인 1969~72년 기간과 1989년에는 한 구간에 1/3, 2/3 지점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늘렸고(단, 최저소득 계급구간과 최고소득 계급구간에서는 중간지점을 선택하였음), 1975~88년 기간은 소득계급수가 16~17개였으므로 중간지점을 선택하였다¹⁰⁾.

A 의 변동은 세제의 전반적인 稅率水準의 변동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比例稅制인 경우 A 는 바로 세율이기 때문이다. α_1 은 세수의 所得彈力性이므로(엄격히는 과세표준에 대한 탄력성) $\alpha_1 > 1$ 이면 累進的인 稅率構造를, $\alpha_1 < 1$ 이면 逆進

的인 稅率構造를, $\alpha_1 = 1$ 이면 比例稅를 뜻한다. 보통 所得稅制가 累進構造를 가지므로 α_1 은 1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免稅點과 계수의 추정치 $\hat{\alpha}_0$ 와 $\hat{\alpha}_1$ 을 稅收函數의 說明變數로 이용하므로 裁量的 變動分을 따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통계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명시적인 稅制變動의 반영으로 데이터 조정에서 야기되는 誤差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α_1 을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대한 것이므로 그만큼 누진도를 충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단지, 여기서는 두 추정치를 所得稅制의 代理變數로 이용한다.

IV. 個人所得稅收 函數推定

1. 所得稅制의 變遷

우리나라 所得稅制는 1961년의 전면적 세제 개편에 따라 완전한 分類所得稅制를 확립했다¹¹⁾.

미군정시대에는 식민지시대의 所得稅制가 1947년 6월 21일, 1948년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소득세율 인상, 인적공제 확대, 資本利得課稅와 讓渡所得課稅의 도입 등이었다. 정부수립 후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여 健全 財政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49년 7월 稅制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稅制改革을 추진하

10) 연도별 소득계급수는 IV章의 <表 1> 참조.

11) 分類所得體系란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所得源泉別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制度를 뜻함. 소득원천별로 소득세를 근로소득세(갑, 을), 이자·배당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75년 이후 종합소득세제 아래서는 이를 원천분, 신고분으로 나누고 있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되고,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있음. 財務部, 『韓國稅制史』, 1979 및 國稅廳, 『國稅廳 二十年史』, 1986 참조.

〈表 1〉 所得稅率構造의 變化

(단위 : %, 萬원)

年次	勤勞/綜合所得稅 ¹⁾				不動產/事業所得稅 ²⁾				利子·配當稅 ³⁾	稅制上の 主된 變化(임법된 연도 기준)
	階級	最低稅率	最高稅率 ³⁾	最低/最高課標(年)	勤勞者免稅點 ⁴⁾	階級	最低稅率	最高稅率		
1961	6	3	21	-	-	-	-	-	-	세제반대개혁, 완전분류소득체계 확립, 이자소득과세, 국제·지방세의 조정, 자진신고납부제, 원천징수제도 신설
1962	3	7	25	-	-	-	-	-	-	소득세누진세율구조 강화, 공개법인 배당소득의 비과세, 증권거래세 신설
1963	4	7	35	-	-	-	-	-	-	
1964	4	7	35	-	-	-	-	-	-	
1965	4	7	35	-	-	-	-	-	-	
1966	4	7	35	-	-	-	-	-	-	소득세 누진구조 강화, 자산재평가세 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정
1967	5	7	40	24	-	-	-	-	-	국세청 발족
1968	7	7	50	18	-	-	-	-	15/5/20	누진구조 강화, 최고세율인상, 연소득 500萬원 이상의 고액소득자에 종합소득과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신설, 전화세법 신설, 지상배당 도입
1969	8	7	50	18/96	-	6	15	50	15/5/20	
1970	9	7	50	12/240	12	6	15	50	15/5/20	주류세 신설
1971	9	7	50	12/240	12	6	15	50	15/5/20	세율인하조정, 기초공제액 인상, 공개법인 대주주 배당소득과세
1972	9	7	48	12/240	18	5	15	48	20/5/20	8·3 조치
1973	9	7	48	12/240	18	5	15	48	20/5/20	
1974	9	7	48	12/240	21.6	5	15	48	20/5/20	종합소득세 제 강화
1975	16	8	70	24/4,800	78	16	8	70	25/5	부양가족공제인상, 방위세 신설
1976	16	8	70	24/4,800	98	16	8	70	25/5	근로소득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액 인상, 보험료공제 신설, 부가가치세 신설
1977	16	8	70	42/5,760	144	16	8	70	25/5	배우자공제액 인상, 의료비 공제 신설
1978	16	8	70	60/8,400	160	16	8	70	25/5	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액 인상, 보험료 공제액 인상

1979	16	8	70 (89.25)	60/8,400	208	16	8	70 (89.25)	60	25/5	세월인하, 근로소득공제·기초공제·부양가 중공제액 인상, 보험료 공제액 인상
1980 ~81	17	6	62 (79.05)	120/6,000	238	17	6	62 (79.05)	120	25/5('80) 10('81)	
1982	17	6	60 (76.5)	120/6,000	268	17	6	60 (76.5)	120	10	세월인하, 제 공제액 인상, 교육세 신설
1983 ~88	16	6	55 (70.125)	180/6,000	274	16	6	55 (70.125)	180	10	세제 단순화 작업, 제 공제액 인상, 세월인 하('88) 지상배당 폐지('85)
1989	8	5	50 (63.75)	250/5,000	460	8	5	50 (63.75)	250	10	

註: 1) 1974년까지는 근로소득세율(甲)이고, 이후는 종합소득세율임.

2) 1975년 이후는 종합소득세율임.

3) ()안의 값은 방위세·주민세 포함한 값임.

4) 5인 가족기준.

5)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968~74년까지는 甲·乙配/紙配/丙配이며, 1975~80년까지는 대주주 甲配/소액주주 乙配의 세율을 나타내며, 이자소득세율은 5%임.

資料: 財務部, 『總括制度分科研究委員會 參考資料』, 1980.11.

——, 『財政金融 30年史』, 1978.

——, 『韓國稅制史』(上·下), 1979.

財務部 稅制局, 『主要稅務統計資料』, 1986.10.

沈錫茂, 「국제 경쟁력 및 기업체 질 강화를 위한 稅制改編方案」, 『韓國租稅研究』, 第1卷, 稅經社, 1985, pp.264~266.

였고, 이 중 소득세제는 종래의 제1종 소득세를 법인세, 제2종(이자·배당소득세)과 제3종 소득세(근로소득세)를 통합하여 一般所得稅와 特別所得稅로 구분, 일반소득은 綜合課稅하고 개별소득에 대해서는 源泉課稅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율구조는 超過累進이고, 소득계급은 17등급이었다.

6·25 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후 UN의 조세전문가 Wald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소득의 우대와 間接稅 爲主의 세제개편 건의를 참작하여 1954년에 세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때 分類所得稅制를 기본으로 하고 綜合所得稅로서 보완하게 하였으며 세율은 비례세로서 8~15%, 종합소득세는 8단계 累進稅率을 적용하였다. 1958년에는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되었고, 이후 몇회의 세법개정을 거친 후 1961년에는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수행하기 위한 開發財政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稅制改革을 단행하였다. 내용은 分類所得稅制의 확립, 자진신고납부제 및 원천징수제도의 신설,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었다.

이후 1967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이 있었는데, 1967년에는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지원하는 直接稅制 強化를 이루었고, 1974년에는 고도성장의 개발성과를 적정 배분하여 조세의 所得再分配機能을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을 그 목표로 하였다.

1967년에는 綜合所得稅制度의 실시에 대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였고, 최고세율을 50~55%로 소득계급을 다단계화하여 分類課稅를 강화하였다. 1974년에는 1973년의 석유과동과 같은 급변하는 世界情勢變化에 부응하는 세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세제개

혁이 이루어졌는데, 이의 일환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綜合所得稅가 강화되었다. 현재의 소득세제 골격은 이때 마련된 것으로 讓渡所得 課稅制度를 신설하고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所得稅收推計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稅率 構造變遷을 1975년 이전은 갑종근로소득세, 그 이후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表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1967년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의 결과 1968년에 소득계급은 7단계로, 최고세율은 50%로 상향조정되어 累進構造가 強化되었다. 1969년과 1970~74년에는 각각 所得階級이 8단계와 9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다. 단지 1972~74년에는 근로소득세의 免稅點이 18萬원과 21.6萬원으로 각각 上向調整되었다.

1974년의 또 한 차례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으로 이전까지의 甲種勤勞所得이 綜合所得稅制로 흡수통합되어 세율구조가 대폭 복잡하게 되어 16단계, 최고세율이 70%로 인상되고 면세점도 78萬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때의 세율구조가 1979년까지 면세점의 지속적인 상향조정(78萬원에서 208萬원으로)만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유지되다가, 1980~82년에는 세율이 소폭인하되었다. 1983년에 추가로 稅率의 引下를 단행해 최저세율은 6%, 최고세율은 55%, 면세점은 274萬원이었는데, 그것은 1988년까지 유지되었다. 현재(1989년)는 所得階級을 8단계로 縮小하고 稅率을(최저세율을 6%에서 5%로, 최고세율을 55%에서 50%로) 小幅引下하고 免稅點도 460萬원으로 引上하였다.

不動產所得 및 事業所得稅率 體系도 근로소

득세와 마찬가지로 1975년 종합소득세제 실시 이전에는 소득계급이 6단계, 세율이 15~50%였으나, 그 이후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거 과세됨으로써 대폭 복잡해졌다.

配當所得稅率體系는 1968년에 도입된 留保利益을 配當으로 간주하는 紙上配當을 포함하여 甲·乙種 配當, 丙種 配當이 각각 다른 5%, 15/20%, 20%의 세율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75년에서 1980년까지는 사실상 5%라는 저율의 利子·配當所得稅率을 적용하여 자본축적을 권장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1986년에는 紙上配當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자소득세율체제도 배당소득세에서와 같이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5%의 저율과세를 유지하다가 1981년부터 10%로 상향조정하였다. 최근에 非實名에 대한 세율을 15%(1983년)에서 20%(1985년), 40%(1989년)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利子所得은 거의 분리과세되고 있는 실정이고, 配當所得은 50~60% 정도가 分離課稅되고 나머지는 綜合所得에 합산되어 과세되고 있다¹²⁾.

〈表 2〉는 勤勞所得/綜合所得稅率構造의 변천을 (5)식의 推定値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1969년을 대상으로 추정된 결과 $\hat{\alpha}_1$ 는 1.5로 稅率構造가 累進的임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所得階級이 69년의 8단계에서 9단계로 늘어나는 대신 最低課標가 18萬원에서 12萬원으로 낮아졌고, 最高課標가 96萬원에서 240萬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最

〈表 2〉 勤勞所得稅와 綜合所得稅率構造의 變遷
— $\ln T_i = \alpha_0 + \alpha_1 \ln Y_i$ 의 推定結果 —

	$\hat{\alpha}_0$	$\hat{\alpha}_1$
1969	-9.0956	1.5335
1970~71	-7.6564	1.4211
1972~74	-7.4156	1.4018
1975~76	-7.3022	1.3843
1977	-7.9027	1.4117
1978~79	-8.0840	1.4133
1980~81	-10.0528	1.5192
1982	-9.8630	1.4987
1983~88	-10.0590	1.5044
1989	-11.1312	1.5607

註: OLS에 의해 추정된 것임. i 는 각 소득계급을 나타내는 첨자이고, Y_i 는 과세표준, T_i 는 이에 상응하는 산출세액임. 단,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그리고 1989년은 계급구간의 수가 작아서 표본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 계급의 1/3, 2/3 지점의 값을 취해서 Y 의 값으로 삼았으며, 그 이후에는 각 계급의 중간값을 취해서 Y 의 값으로 삼았음. 위 계수추정결과는 盧基星(1990)의 것과 차이가 나는데(특히 α_0), 이는 통계자료의 단위변경(1,000원에서 1원으로)과 일부 잘못된 계산된 稅額計算의 수정에 의한 것임. 그리고 \bar{R}^2 는 모두 0.99 이상을 나타냈음.

低稅率과 最高稅率은 變動이 없었다. 所得階級이 늘어나면 累進構造가 강화되리라고 보통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hat{\alpha}_1$ 의 推定値가 1.4로 낮아져 累進度가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最高稅率은 변화가 없이, 最高課標가 무려 150%나 상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972년에는 所得階級數, 最低稅率, 最低/最高課標가 동일하나 最高稅率이 2%포인트 낮아져, 累進度가 약화될 것으로 쉽게 짐작되고, $\hat{\alpha}_1$ 도 1.40으로 낮아졌다.

1975년에는 所得階級이 16계급으로 最低稅率이 1%포인트, 最高稅率이 22%포인트 인상되어, 稅制가 대폭 강화되었다. 그리고 最低 및 最高課標가 각각 2배 및 20배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1970년에서

12) 尹建永(1987)에 의하면 1985년 이자소득은 99%가, 배당소득은 56.2%가 분리과세되고 있음. p.48 참조.

와 같이 累進도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에는 最低/最高課標가 인상되었는데, 最高課標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률을 나타냄으로써 $\hat{\alpha}_1$ 은 커졌다. 1980년에는 所得階級數가 1개 늘어났고, 最低課標는 2배로 인상되었으며, 最高課標는 1979년의 경우보다 줄었다. 그리고 最低 및 最高稅率이 각각 2%포인트, 8%포인트 낮아졌으나, 1980년 最高課標에서의 稅率은 1979년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累進도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hat{\alpha}_1$ 의 推定値도 증대된 1.5를 나타내었다. 1982년에는 最高稅率이 2%포인트 낮아져 累進도는 약간 약화되었고($\hat{\alpha}_1=1.49$), 1983년 이후 最高課標가 낮아지고 最低課標가 대폭 상승하여 累進構造가 強化되어 $\hat{\alpha}_1$ 의 값도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① 다른 사정이 동일할 때 最低稅率이 引下(인상)되면 累進構造가 強化(약화)되고 ② 最高課標가 引下(인상)되면 累進構造가 強化(약화)되며 ③ 所得階級數가 增大된다고 하여 반드시 稅制의 累進構造가 強化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稅制의 累進構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所得分布를 勘案해야 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hat{\alpha}_0$ 는 $\hat{\alpha}_1$ 에서와는 반대로 점점 커지다가 1975, 1976년에 가장 높고 이후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at{\alpha}_0$ 와 $\hat{\alpha}_1$ 의 값이 서로 강한 逆相關關係를 가지기 때문이지만, 각 所得階級の 下限과 上限所得이 같은 비율로

모두 尙尙조정된 것이 아니고 高所得階級 區間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尙尙조정되었으며, 累進構造를 강화하면 전반적인 稅率水準을 낮출 수 있는 餘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³⁾.

2. 所得稅收構造

所得稅는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6년에 國稅에서 21.0%를 차지하여 稅收入面에서 가장 중요한 稅目이었으나 1988년에는 15.2%를 나타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소득세 종류별로 보면 1966년의 甲種勤勞所得稅와 事業所得稅가 전체 소득세에서 각각 46.3%와 44.8%를 차지하여 소득세가 이들 두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贈與·병중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각각 5.4%, 2.0%를 차지하였다.

이후 1975년까지 甲種勤勞所得稅는 40~50% 사이에서, 事業所得稅는 30~40% 사이에서 그 비중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69년의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 실시로 綜合所得稅의 比重이 1969년의 1.1%에서 점점 높아져 1974년에는 8.7%에 이르렀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세수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1976년의 42%에서 다소 변동을 나타내다가 1988년에는 47.2%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0% 정도로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한 소득세의 원천은 종합소득과 이자소득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종합소득에서는 점점 낮아지는 반면 이자소득은 점점 높아졌다. 綜合所得稅

13) $\hat{\alpha}_0$ 와 $\hat{\alpha}_1$ 의 逆相關關係는 이를 선형으로 회귀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음.

$$\hat{\alpha}_0 = 3.19 - 31.9 \ln \hat{\alpha}_1$$

(4.7) (18.1)

$R^2=0.94$, ()안은 t -통계치의 절대값

〈表 3〉 所得稅 種類別 稅收構造

(단위: 억원, %)

	總和稅		國稅 ¹⁾		所 得 稅													
	金額	比重 ²⁾	金額	比重 ³⁾	中					告					源泉分			
					綜合所得稅		讓渡所得稅		綜合所得稅		讓渡所得稅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1966	1,126	203	21.0	-	-	-	-	-	-	-	-	-	-	-	-	-	-	-
1967	1,549	310	22.0	-	-	-	-	-	-	-	-	-	-	-	-	-	-	-
1968	2,305	476	22.2	-	-	-	-	-	-	-	-	-	-	-	-	-	-	-
1969	3,151	696	24.2	-	-	-	-	-	-	8	1.1	-	-	-	-	-	-	-
1970	3,981	845	23.2	-	-	-	-	-	-	34	4.0	-	-	-	-	-	-	-
1971	4,919	1,076	23.8	-	-	-	-	-	-	53	4.9	-	-	-	-	-	-	-
1972	3,230	1,047	22.0	-	-	-	-	-	-	65	6.2	-	-	-	-	-	-	-
1973	6,526	1,237	21.4	-	-	-	-	-	-	88	7.2	-	-	-	-	-	-	-
1974	10,217	1,647	18.0	-	-	-	-	-	-	144	8.7	-	-	-	-	-	-	-
1975	15,498	1,986	14.3	-	-	-	-	-	-	233	11.7	-	-	-	-	-	-	-
1976	23,133	3,190	15.2	-	-	-	-	-	-	691	21.7	-	-	-	-	-	-	-
1977	29,493	3,527	13.5	-	-	-	-	-	-	1,477	41.9	-	-	-	-	-	-	-
1978	40,955	4,678	17.6	-	-	-	-	-	-	1,743	37.3	-	-	-	-	-	-	-
1979	53,609	6,147	12.9	-	-	-	-	-	-	2,472	40.2	-	-	-	-	-	-	-
1980	65,754	6,614	11.4	-	-	-	-	-	-	2,988	39.3	-	-	-	-	-	-	-
1981	81,724	8,862	12.2	-	-	-	-	-	-	3,147	28.9	-	-	-	-	-	-	-
1982	95,156	10,055	12.0	-	-	-	-	-	-	3,737	29.3	-	-	-	-	-	-	-
1983	114,479	11,361	11.3	-	-	-	-	-	-	4,360	28.4	-	-	-	-	-	-	-
1984	124,082	12,291	11.4	-	-	-	-	-	-	4,537	28.8	-	-	-	-	-	-	-
1985	135,314	14,816	12.5	-	-	-	-	-	-	5,269	29.3	-	-	-	-	-	-	-
1986	154,160	17,846	13.1	-	-	-	-	-	-	6,259	28.2	-	-	-	-	-	-	-
1987	185,360	21,589	13.2	-	-	-	-	-	-	7,177	26.2	-	-	-	-	-	-	-
1988	225,842	29,641	15.2	-	-	-	-	-	-	9,842	22.3	-	-	-	-	-	-	-
1989	251,799	35,569	16.8	-	-	-	-	-	-	12,999	20.9	-	-	-	-	-	-	-

(단위: 억원, %)

	所得稅											
	所 源				泉 分				稅			
	利子所得稅		配當所得稅		利子+配當所得稅		事業所得稅		勤勞所得稅		不動產所得稅 ⁶⁾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⁵⁾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1966	-	-	11	5.4	11	5.4	91	44.8	94	46.3	4	2.0
1967	-	-	23	7.5	23	7.5	124	39.9	153	49.4	7	2.3
1968	-	-	48	10.0	48	10.0	183	38.4	229	48.1	13	2.7
1969	-	-	68	9.8	68	9.8	229	32.8	363	52.2	24	3.5
1970	-	-	93	11.0	93	11.0	331	39.2	348	41.2	34	4.0
1971	-	-	116	10.8	116	10.8	384	35.7	466	43.3	47	4.4
1972	-	-	82	7.8	82	7.8	364	34.8	476	45.5	52	5.0
1973	-	-	87	7.1	87	7.1	454	31.2	541	43.7	55	4.5
1974	-	-	138	8.4	138	8.4	644	39.1	632	38.4	71	4.3
1975	-	-	243	12.2	243	12.2	659	33.2	777	39.1	27	1.4
1976	154	4.8	230	7.2	384	12.0	92	2.9	1,339	42.0	-	-
1977	205	5.8	311	8.8	516	14.6	75	2.1	1,389	39.4	-	-
1978	257	5.5	325	7.0	582	12.4	12	0.3	1,955	41.8	39	0.8
1979	367	6.0	307	5.0	674	11.0	23	0.4	2,524	41.1	63	1.0
1980	557	8.4	303	4.6	860	13.0	28	0.4	2,662	40.2	77	1.2
1981	1,337	15.1	304	3.4	1,641	18.5	46	0.5	3,931	44.4	96	1.1
1982	1,911	19.0	362	3.6	2,273	22.6	54	0.5	3,858	38.4	133	1.3
1983	1,994	17.6	315	2.8	2,309	20.3	57	0.5	4,460	39.3	174	1.5
1984	1,941	15.8	399	3.3	2,340	19.8	64	0.5	5,144	41.9	205	1.7
1985	2,341	15.8	514	3.5	2,855	19.3	66	0.5	6,385	43.1	239	1.6
1986	2,963	16.6	525	2.9	3,844	19.5	78	0.4	7,899	44.3	272	1.5
1987	3,465	16.1	756	3.5	4,221	19.6	95	0.4	10,066	46.6	322	1.5
1988	4,290	14.5	903	3.1	5,193	17.5	130	0.4	14,004	47.2	474	1.6
1989	5,224	14.7	1,413	4.0	6,637	18.7	-	-	15,169	42.6	764	2.1

註: 1) 국세는 전매익금을 포함한 금액임. 2) 국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 3)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비중. 4) 신고분 가운데 산립소득, 을중근로소득 세수는 미미하여 제외. 5) 『국세통계연보』에서 작성된 사업소득세는 1976년을 기점으로 불연속성을 보이고 있음. 6) 1978년 이후는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임. 1976, 77년은 통계가 불가능하였음.

資料: 財務部 稅制局, 『主要稅務統計資料』, 1986. 10. 財務部, 『總括制度分科研究委員會 參考資料』, 1980. 11. 財務部, 『1990歲人豫算(案)』, 1989. 9.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財務部, 『韓國稅制史』(上·下), 1979.

는 1978년에는 전체 소득세의 37.3%를 차지하다가 1988년에는 22.3%로 하락했고, 利子所得稅는 1978년 5.5%이던 것이 1988년에는 14.5%로 높아졌다. 讓渡所得稅는 그 비중이 1978년의 7% 수준에서 1988년에는 10% 수준으로 그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配當所得稅는 1968~75년 기간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속 하락하여 1988년에 소득세의 3%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토지나 주택과 같은 不動產의 實去來價가 투기억제를 위해 현실화되고, 배당소득세의 일부가 신고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타 산림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업소득세의 통계가 1976년부터 원천분으로만 나타나므로, 事業所得稅收를 종합

소득세수통계를 토대로 추측해 보면 소득세수의 22%(1988) 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세수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6년의 45%, 1971년의 35.7%, 그리고 1975년의 33%에서 1988년의 20% 수준으로 계속 낮아졌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상의 所得稅收構造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所得稅收入은 지나치게 勤勞所得稅에 의존하고 있고, 둘째 금융자산소득의 실명제 미정착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捕捉率 低位로 말미암은 종합소득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셋째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의 소득이 源泉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水平的 衡平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3. 所得稅收函數 推定

所得稅收推計를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다양성, 즉 종합소득세제와 分離課稅制의 병존 및 소득세수입 통계상 源泉分과 申告分의 구별로 인하여 각 소득세 종류별로 세수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는 1974년 12월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수통계의 一貫性이 缺如되었고, 분류방식도 변경되어 소득 종류별 모든 세수함수 추정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를 원천분 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와 신고분인 綜合所得稅의 稅收函數를 각각 추정하고자 한다.

勤勞所得稅收統計는 1974년까지는 갑종근로소득세로 분류되었고, 1975년 이후에는 종합

14)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事業所得稅收에 관한 통계인데, 1975년까지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버금가는 것이었으나 그후에는 통계가 원천분으로밖에 계상되지 않고 있고, 또한 그것의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사업소득세수는 신고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이것은 사업소득세의 크기가 근로소득세에 비해 대단히 낮게 부과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水平的 衡平性機能에 관한 심층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소득세수의 통계도 『국세통계연보』와 같은 공식통계집에 게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1988년 종합소득세결정 유형신고에서 사업·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자는 전체 종합소득신고자의 단지 3.1%를 차지하고 세부담은 13.2%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수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부동산소득세인 것을 알 수 있음.

15) 엄밀한 의미에서 수평적 형평은 효용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이런 점에서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단지 소득의 합이 같다고 해서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평적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Feldstein, 1975, pp. 17~19).

소득세체계의 수립으로 勤勞所得만이 있는 소득자들의 源泉徵收分만이 통계가 가능하므로 이들을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利子·配當所得 稅收統計는 1975년 이후 源泉徵收分만을 그 이전과 연결시켰다. 綜合所得稅收統計는 부분적인 종합소득세가 실시되던 1969~75년과 그 이후 사이에 단층현상을 보였으므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1976년 이후의 것만을 이용하였다.

가. 勤勞所得稅收函數

所得稅收函數 (4)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계수가 바로 彈性値를 나타내는 로그線型回歸函數를

$$TL_t = \theta_0 + \theta_1 Y_t + \theta_2 DED_t + \theta_3 \hat{a}_{0t} + \theta_4 \hat{a}_{1t} + \varepsilon_t \dots\dots\dots (6)$$

로 설정하였다. 從屬變數와 각 說明變數는 로그를 취한 것이고(단, \hat{a}_0 는 로그를 취하지 않았음), TL , Y , DED , \hat{a} , \hat{a}_1 , ID 는 각각 근로소득세수, 과세베이스, 면세점(기초공제와 소득공제를 5인자각기준으로 계산), 세율구조를 나타내는 지표,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변수를 나타낸다. 이용한 통계는 勤勞所得稅收는 <表 3>, 免稅點은 <表 1>, 稅率構造를 나타내는 지표는 (5)식 추정결과, 課稅베이스는 피용자보수(附表 2 참조)를 이용하였다.

나. 利子 및 配當所得稅收函數

利子·配當所得稅收函數는 각각 利子和 配當所得稅收函數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배당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가 누진적인 것과는 달리 比例稅이다. 따라서 세수함수도 아래

(7)식과 같이 대단히 단순하다. TF 는 稅收, Y 는 課稅베이스, m 은 稅率을 나타낸다(t 는 기간을 나타내는 하첨자임. 그리고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한 것임).

$$TF_t = \pi_0 + \pi_1 Y_t + \pi_2 m_t + \varepsilon_t \dots\dots\dots (7)$$

그런데 과세베이스는 각각 利子所得과 配當所得을 설명변수로 하여야 하나,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GNP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예금이자율이나, 社債收益率과 같은 수익률, 여타 대체재의 收益率(예를 들면, 株價上昇率, 地價上昇率), 이자소득세율, 그리고 소득의 함수이므로 이들을 추가로 설명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註 21의 추정결과 참조). 배당소득은 역시 기업의 배당행태, 상장주식자본금, 배당률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상장주식자본금을 GNP 대신 이용해 보았다.

配當所得稅收는 1969~89년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과세베이스의 대리변수인 上場株式資本金 그리고 稅率에 대해서 회귀시켜 보았다. 配當所得稅率은 甲·乙配와 丙配稅率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자소득도 배당소득과 같이 분리과세되므로 짧은 표본기간(1976~89년)이나마 (7)식을 이용하여 利子所得稅收函數를 추정해 보았다.

다. 綜合所得稅收函數

所得稅收函數는 종류별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자료가 가능한 근로소득세수, 이자 및 배당소득세수함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의 綜合所得稅制의 실시로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되므로, 綜合所得稅收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징수 및 납부방법이 源泉徵收되는 근로소득세나 이자·배당소득세에서와는 달리 신고납부제도이므로 분리추정이 더욱 필요하다.

종합소득세수는 신고분만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소득세수 중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분리과세되는 양도, 퇴직, 산림소득이 제외되어 있다¹⁶⁾. 따라서 이 종합소득세수 통계에는 부동산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의 綜合課稅 徵收分이 포함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9월과 12월에 각각 전년도 綜合所得稅 決定稅額의 1/3씩을 예납하고 다음해 5월말까지 전년도 算出稅額에다 豫納分을 제외한 나머지를 申告納付하게 되어 있다¹⁷⁾. 따라서 이를 모형에 반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결정세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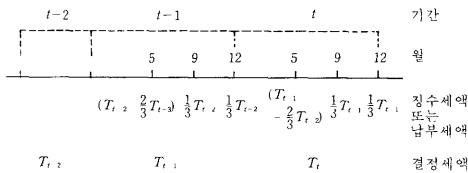
$$T_t = \beta X_t + \varepsilon_t \quad \dots\dots\dots (8)$$

와 같이 표시될 수 있고 신고·납부제에 의한 징수액 (T_t^*)은 아래 (9)식과 같이 표시된다.

$$\begin{aligned} T_t^* &= (T_{t-1} - \frac{2}{3}T_{t-2}) + \frac{2}{3}T_{t-1} \\ &= T_{t-1} + \frac{2}{3}(T_{t-1} - T_{t-2}) \\ &= 1.67T_{t-1} - \frac{2}{3}T_{t-2} \\ &= \beta[1.67X_{t-1} - 0.67X_{t-2}] + v_t \quad \dots\dots\dots (9) \\ v_t &= 1.67\varepsilon_{t-1} - 0.67\varepsilon_{t-2} \quad \dots\dots\dots \end{aligned}$$

16)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세수의 일부는 종합소득세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자소득세의 종합과세분은 미미하고, 배당소득세의 종합과세분은 별도의 통계가 가능하지 않았음. 가능한 종합소득세수 통계는 1976~89년 기간이었음. 19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가 시행되었음에도 행정 및 통계처리상 1976년부터 통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17) 소득세법 제83조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의소득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에납세액”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여기서 X_t 는 독립변수를 대표하고 v_t 와 ε_t 는 古典的인 조건을 만족하는 교란항을 나타낸다¹⁸⁾.

위 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t 기의 綜合所得稅收는 ($t-1$)기와 ($t-2$)기의 설명변수 (X) 효과의 각각 1.67배와 -0.67배의 영향을 받는다. (9)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標本期間이 짧은 관계로(1977~89년) 설명변수의 통계를 변형시켜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變形된 統計를 X^* 라 하면

$$X_t^* = 1.67X_{t-1} - 0.67X_{t-2} \quad \dots\dots\dots (10)$$

와 같이 표시된다(X^* , X , T^* 는 모두 로그를 취한 값임).

18) ε_t 가 고전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v_t 는 고전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v_t 가 고전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MA과정을 만족한다면 GLS기법을 이용해야 함. GLS기법 적용에 대해서는 盧基星(1990)의 부록 참조.

1977~89년을 표본기간으로 이용하고, 綜合所得稅收函數에는 기본적으로 勤勞所得稅收函數에서와 같이 과세베이스, 인적공제액, 세율구조 등이 설명변수로 포함되게 하였다(附表 2 참조).

4. 所得稅收函數 推定結果

각 稅收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表 4>에 나타나 있다¹⁹⁾. 먼저 勤勞所得稅收函數는 세수를 被傭者報酬, 免稅點(5인가족 기준), 그리고 $\hat{\alpha}_0$, $\hat{\alpha}_1$ 에 대해서 回歸시켜 추정하였다. 課稅베이스로서 근로소득세 예측에 임금상승률 예측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被傭者報酬를, 그리고 보통 GNP에 대한 彈力性을 많이 이용하므로 GNP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表 4>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所得分配狀態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係數를 포함시켜 보았으나 유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OLS技法에 의하여 추정한 결과 時系列相關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CORC技法(코크란-오컷)에 의하여 추정해 보았다.

19) <表 4>에 보고된 추정치와 盧基星(1990)에서의 추정치와의 차이는 통계자료의 변경(α_0 , α_1 의 새로운 추정치 이용)과 표본기간 연장에 의한 것임. 그리고 기존의 稅收推計研究에서는 稅收의 所得彈力性과 더불어 稅收의 浮揚性의 추정치로 보고하는데 부양성이란 다름 아닌 조정이 안된 稅收統計를 GNP(과세베이스)에만 회귀시켜 구한 추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 추정치는 여타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누락문제로부터 야기되는 非一致性, 偏倚性, 非效率性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지님. 그리고 부양성이 稅收展望이나 豫測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20) 한 설명변수의 添削에 따른 係數推定值의 급격한 변동은 설명변수간 多重共線性的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현상임.

먼저 OLS推定の 경우 근로소득세수의 피용자보수에 대한 탄력성은 1.29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免稅點에 대한 탄력성은 -0.28로서 기대한 대로 부호도 負(-)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稅率構造를 나타내는 $\hat{\alpha}_0$, $\hat{\alpha}_1$ 의 탄력성은 부호는 기대한 바와 같이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hat{\alpha}_0$ 와 $\hat{\alpha}_1$ 사이에 강한 相關關係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hat{\alpha}_1$ 만 포함시켜 본 결과, 역시 기대한 대로 Y와 DED에 대한 계수는 안정적이었으나 $\hat{\alpha}_0$ 에 대한 계수는 ①식의 16.8에서 ⑤식의 0.84로 급격히 변하였다²⁰⁾. 그러나 역시 $\hat{\alpha}_0$ 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CORC에 의하여 추정된 경우, 被傭者報酬에 대한 稅收彈力性은 OLS의 경우보다 커져 1.43을 나타내었고 유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계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課稅베이스로서 GNP를 이용한 경우 GNP에 대한 彈力性은 被傭者報酬를 이용한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는 1.27(OLS)과 1.46(CORC)을 나타냈다. 여타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도 被傭者報酬를 이용한 경우와 크거나 부호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配當所得稅收函數 推定에서는 과세베이스로 上場株式資本金과 GNP를 선택하였다. 이는 배당률이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配當稅率은 甲, 乙, 丙配分에 대한 稅率을 산술평균하여 이용하였고, 비과세 및 면세제도는 수량화의 곤란으로 이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추정결과는 上場株式資本金에 대한 계수는 0.52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稅率에 대한 계수는 부호가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그 값의 크기도 0에 가까운 것이었다. 과세베이스로서 GNP를 이

〈表 4〉 所得稅收函數 推定結果

回 歸 式	標本期間	C	Y	m	DED (INEX)	$\hat{\alpha}_0$	$\hat{\alpha}_1$	\bar{R}^2	D.W.	ρ
勤勞所得① 稅收函數	1970~89	-6.2450 (2.6264)	1.2878 (7.7711)*		-0.2808 (2.8846)**	0.6547 (1.0697)	16.8366 (1.0188)	0.99	1.04	
②	1970~89	-3.7618 (7.2713)*	1.1530 (10.6094)*		-0.3064 (-3.2338)**		-0.7514 (0.4493)	0.99	0.94	
③	1971~89	-8.8575 (3.4846)	1.4253 (7.6881)*		-0.0250 (0.2039)	0.9442 (1.8029)	22.4886 (1.6222)	0.99	1.96	0.82
④	1970~89	-7.9093 (2.9456)	1.2701 (7.3964)*		-0.2481 (2.4881)**	0.5104 (0.8159)	14.7008 (0.8611)	0.99	1.06	
⑤	1970~89	-5.7937 (8.3976)	1.1649 (10.3787)*		-0.2721 (2.8842)**		0.8361 (0.5187)	0.99	0.97	
⑥	1971~89	-10.9075 (3.7653)	1.4647 (7.3821)*		-0.0282 (0.2154)	0.7754 (1.4207)	19.0185 (1.3099)	0.99	1.97	0.81
配當所得⑦ 稅收函數	1969~89	-0.5262 (0.9184)	0.5190 (16.1674)*	0.0411 (0.3369)				0.96	1.40	
⑧	1969~89	-2.5033 (2.2639)	0.6125 (10.8070)*	0.2027 (1.0817)				0.90	0.79	
⑨	1969~89	-3.9162 (1.4972)	0.7260 (4.2873)*	0.2039 (0.7682)				0.91	1.72	0.70
利子所得⑩ 稅收函數	1976~89	-10.4884 (14.7013)	1.1534 (15.7523)*	1.1591 (7.5560)*				0.99	1.86	
綜合所得⑪ 稅收函數	1977~89	-6.3611 (3.9223)	0.9862 (9.6926)*		0.4449 (1.8746)***	0.9075 (2.5809)**	20.1479 (2.1887)***	0.98	2.31	
⑫	1977~89	-2.3339 (4.1358)*	0.7831 (9.5157)*		0.2860 (0.9776)		-3.2762 (1.6669)	0.97	1.10	

註: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Y: 근로소득세수합수의 경우 ①②③은 피용자보수, ④⑤⑥은 GNP, 배당소득세수합수의 경우, ⑦은 상장주식자본금이고, ⑧⑨는 GNP, 종합소득세
 수와 이자소득세수합수의 경우 GNP임.
 m: 세율

DED (INEX): DED 면세점
 INEX 인적공제액

③⑥⑨는 CORC기법을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OLS기법을 이용한 것임.
 ()안은 t-통계치의 절대값을 나타냄.

용한 경우 그 탄력성은 0.61(OLS), 0.73(CORC)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역시 稅率에 대한 탄력성은 부호가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比例稅制인 경우, 稅收는 課稅標準과 稅率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單位彈力的이나 위 결과는 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과세베이스로 이용한 上場株式資本金과 GNP가 실제 배당소득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綜合稅制 實施로 인한 稅收統計의 不連續性을 감안하여, 76년 이후에는 1을 기울기에 각각 추가하여 보았으나 그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利子所得稅收函數 推定結果에 의하면 課稅 베이스變數 GNP에 대한 탄력성은 1.15, 稅率變數에 대한 탄력성은 1.1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²¹⁾. 그런데 두 추정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즉 利子所得稅收函數 推定에서 GNP가 이용된 것은 이것이 과세베이스의 대리변수로서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아래 (13)식에서와 같이 利子所得稅收函數

의 축약형에서 GNP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利子所得 R 은 $GNP(Y)$ 와 純收益率 ($n=r(1-m)$) 단, r 은 수익률)의 함수일 것이므로

$$R = R(Y, n, \dots) \dots\dots\dots(11)$$

로 표시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수함수는

$$T_F = R(Y, n, \dots) \cdot m \dots\dots\dots(12)$$

이고, 다시

$$T_F = T_F(Y, m, r, \dots) \dots\dots\dots(13)$$

의 축약형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GNP에 대한 利子所得稅收의 彈力性은

$$E_{T_F, Y} = E_{T_F, R} \cdot E_{R, Y} \dots\dots\dots(14)$$

에서와 같이 이자소득에 대한 利子所得稅收 彈力性 $E_{T_F, R}$ 과 GNP에 대한 利子所得의 彈力性, $E_{R, Y}$ 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E_{T_F, R} = 1$ 이므로 $E_{R, Y}$ 가 된다. 따라서 GNP에 대한 利子所得稅收의 推定值인 1.15는 바로 GNP에 대한 民間의 利子所得의 彈力性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利子所得稅收의 稅率에 대한 彈力性은

$$E_{T_F, m} = E_{R, n} - \frac{r}{R} \frac{\delta R}{\delta n} + 1 \dots\dots\dots(15)$$

로 나타나고 R 의 純收益率에 대한 彈力性에 $E_{R, n}$ 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부터 $E_{R, n}$ 의 값은 적어도 0.16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民間의 利子所得이 稅率에 대해서 非彈力的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綜合所得稅收函數의 추정결과를 課稅 베이스 GNP에 대한 彈力性이 0.99이고 통계적으로

21) 여타 설명변수로서 社債收益率, 地價上昇率, 株價指數 등을 포함시켜 보았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GNP와 稅率에 대한 계수가 여전히 안정적이었음.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ln T_F = -11.33 + 1.18 \ln GNP + 1.15 \ln m \quad (15.7)^* \quad (5.3)^*$$

$$+ 0.14 \ln r - 0.04 \ln LP \quad (0.8) \quad (0.8)$$

$$\bar{R}^2 = 0.99, D.W. = 2.1$$

$$\ln T_F = -11.4 + 1.16 \ln GNP + 1.26 \ln m \quad (9.96)^* \quad (6.13)^*$$

$$+ 0.20 \ln r - 0.004 \ln SP \quad (1.28) \quad (0.05)$$

$$\bar{R}^2 = 0.99, D.W. = 2.5$$

r : 社債收益率, SP : 株價指數, LP : 地價上昇率, ()안은 t -통계치의 절대값

유의하며, 人的控除(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만 포함시킴)에 대한 탄력성은 부호는 기대와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율구조의 대리변수인 $\hat{\alpha}_0$, $\hat{\alpha}_1$ 에 대한 계수는 각각 0.9, 20.1을 나타내어 기대한 대로 부호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所得分配狀態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지니」係數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勤勞所得稅收函數 推定에서와 같이 $\hat{\alpha}_1$ 만을 포함한 경우, 역시 $\hat{\alpha}_1$ 계수는 급격한 변동을 보였고 GNP를 제외한 인적공제 $\hat{\alpha}_1$ 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추정결과를 해석할 때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각 推定值가 해당변수들의 彈力性을 나타내는 것이나 綜合所得稅 徵收時差를 고려하여 변형된 통계를 이용하였으므로 추정치에다 1.67과 -0.67을 곱하여 각각 前年度와 前前年度의 說明變數에 대한 彈力性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V. 結 論

以上에서의 所得稅收函數 種類別 推定結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자소득세의 所得(피용자보수, GNP)彈力性은 0.8~1.4를 나타내 1에 근사한 수치를 나타냈고, 배당소득세의 所得(GNP, 상장주식자본금)彈力性은 0.5~0.7을 나타내 1보다 작았다.
- 2) 회귀방정식의 決定係數는 배당소득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0.99 이상으로 所得稅

收變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근로소득세수함수 추정의 경우 所得(피용자보수, GNP)과 免稅點에 대한 탄력성은 유의하게 그리고 기대한 방향으로 나타났다(각각 1.2~1.4, 0.3), 稅率構造(누진구조와 세율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수함수에서는 인적공제와 세율구조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적공제계수의 부호는 기대하였던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多重共線性을 고려하여 $\hat{\alpha}_1$ 만 설명변수로 포함한 경우 인적공제, $\hat{\alpha}_1$ 에 대한 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4) 配當所得稅收函數 추정결과는 세율탄력성이 유의하지 않았고 과세베이스로서 上場株式資本金을 이용한 경우가 GNP를 이용한 경우보다 설명력이 높았다.
- 5) 이자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 Y와 m의 각 彈力性은 유의하게 (+)로 나타났고 그 크기가 1.15와 1.16으로 각각 나타나, 이자소득의 GNP에 대한 탄력성이 1.15이고, 순수익률에 대한 탄력성이 적어도 0.16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6) 종합소득세수는 徵收時差가 前年과 前前년에 걸쳐 존재하고 所得(GNP)彈力性이 0.8~1.0이므로 時差效果를 고려하면 前年度 所得變動의 1.5배, 前前年 소득변동의 -0.6배만큼 稅收가 영향을 받는다.
- 7)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車 軒權(1983)과 尹建永(1990)의 소득세수의 GNP에 대한 彈力性 推定值가

1.3~1.5인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의 所得彈力性 推定値는 이와 거의 같거나 작은 수치를 나타냈다.

8) 이 연구에서는 所得稅 中 讓渡所得稅收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 함수를 추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所得稅收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수함수를 추

정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所得稅收의 所得彈力性을 개략 짐작해보면 1.2~1.3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勤勞所得稅 稅率構造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稅率構造變動은 稅收의 변동보다는 階層別 稅負擔의變動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豫算便覽』, 1989.

國稅廳, 『國稅廳 二十年史』, 1986.

南相祐, 「80년대 후반 이후의 財政需要 및 租稅負擔率 展望」, 郭泰元·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研究院, 1986.

盧基星, 「個人所得稅의 稅收推計」, 盧基星 외, 『稅收推計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0.

朴宗淇,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韓國開發研究院, 1975.

尹建永, 「韓國의 所得稅制와 法人稅制의 合理化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7.

———, 「稅收豫測模型間의 正確性 比較」, 盧基星 외, 『稅收推計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0.

財務部, 『韓國稅制史』(上·下), 1979.

車軒權, 「稅收推計模型의 精密化와 中·短期 稅收展望」, 韓國經濟研究院, 1983.

崔洸·李基煥, 「豫算推定の 正確度에 관한 實證的 分析」, 『韓國開發研究』, 1985 봄.

Anderson, P.S., "Built-in Flexibility and Sensitivity of the Personal Income Tax in Denmark," *Swedish Journal of Eco-*

nomics, 1973.

Baas, H.J. and D.A. Dixon, "The Elasticity of the British Tax System 1950/51~1970/71," IMF, Sep. 23, 1974.

Chand, S.K., "Tax Revenue Forecasting : An Approach Applied to Malaysia," IMF, Mar. 12, 1975.

Dorrington, J.C., "A Structural Approach to Estimating the Built-in Flexibility of U. K. Taxes on Personal Income," *The Economic Journal*, Vol. 84, No.335, 1974.

Feldstein, M., "On the Theory of Tax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Public Economics, 1975.

Hutton, J.P. and P.J. Lambert, "Evaluating Income Tax Revenue Elasticities," *The Economic Journal*, Vol.90, No. 360, Dec. 1980.

———, "Modelling the Effects of Income Growth and Discretionary Change on the Sensitivity of U.K. Income Tax Revenue," *The Economic Journal*, Vol.92, No.365, 1982.

OECD, *Tax Elasticities*, 1984.

Park, C.K., "A Forecasting Model for Revenue Estimation of Direct Taxes," KDI Working Paper 7210, 1972.

Prest, A.R., "The Sensitivity of Yield of Personal Income Tax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Economic Journal*, Vol. 72, 1962. 9.

Wellink, N., "Sensitivity of Personal Income Tax Revenue," *National Tax Journal*, Vol.27, 1974.

〈附表 1〉 稅目別 所得稅 豫算 및 徵收實績

(단위 : 億원, %)

所	所得稅		綜合所得稅		不動產所得稅		利子·配當所得稅		事業所得稅		甲種勤勞所得稅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1969	588	696 118.37	22	8 36.36	20	24 120.00	64	68 106.25	208	229 110.10	270	363 134.44
1970	716	845 118.02	52	33 63.46	26	34 130.77	83	93 112.05	268	331 123.51	283	348 122.97
1971	935	1,076 115.08	66	53 80.30	34	47 138.24	105	116 110.48	340	384 112.94	386	466 120.73
1972	1,108	1,047 94.49	75	64 85.33	52	52 100.00	95	82 86.32	359	364 101.39	516	476 92.25
1973	1,197	1,237 103.34	149	89 59.73	58	55 94.83	118	87 73.73	314	454 144.59	547	541 98.90
1974	1,421	1,647 115.90	177	144 81.36	71	71 100.00	150	138 92.00	437	644 147.37	569	632 111.07
1975	1,793	1,986 110.76	219	233 106.39	66	27 40.91	240	243 101.25	560	658 117.50	667	777 116.49

所	所得稅		申告		源泉		分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豫算	決算/豫算
1976	3,092	3,190 103.17	1,343	1,352 100.67	1,750	1,839 105.09		
1977	4,039	3,527 87.32	2,100	1,549 73.76	1,940	1,978 101.96		
1978	5,076	4,078 92.16	2,861	2,089 73.02	2,215	2,588 116.84		
1979	6,038	6,147 101.81	2,925	2,863 97.88	3,114	3,284 105.46		
1980	6,165	6,614 107.28	3,634	2,988 82.22	2,531	3,626 143.26		
1981	7,950	8,862 111.47	3,091	3,147 101.81	4,860	5,714 117.57		
1982	9,447	10,055 106.44	3,656	3,737 102.22	5,791	6,318 109.10		
1983	10,843	11,301 104.78	4,133	4,360 105.49	6,710	7,001 104.34		
1984	11,994	12,291 102.48	4,346	4,537 104.39	7,648	7,753 101.37		
1985	13,505	14,816 109.71	5,130	5,269 102.71	8,376	9,546 113.97		
1986	16,038	17,846 111.27	5,709	6,259 109.63	10,330	11,587 112.17		
1987	19,255	21,589 112.12	6,652	7,177 107.89	12,603	14,412 114.35		
1988	22,713	29,641 130.50	8,003	9,842 122.98	14,710	19,799 134.60		
1989	27,616	35,569 128.80	12,649	12,999 102.77	14,967	22,570 150.80		

註 : 1962, 1972, 74, 75, 76년 예산액은 『예산개요』와 『국세통계연보』, 『결산개요』와 『국세통계연보』,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함.

資料 :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년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결산개요』, 『예산개요참고자료』, 각년도. 재무부, 『결산개요』, 각년도.

〈附表 2〉 統計資料

	GNP (億圓)	被傭者報酬 (億圓)	人的控除 (萬圓)	上場株式資本金 (億圓)
1966	10,370	2,990	—	—
1967	12,812	4,053	—	—
1968	16,529	5,231	—	—
1969	21,553	7,036	—	1,199
1970	27,850	9,349	—	1,343
1971	34,167	11,554	—	1,414
1972	41,912	14,058	—	1,743
1973	53,763	18,309	—	2,516
1974	75,974	24,763	—	3,813
1975	101,358	33,483	48	6,434
1976	139,127	47,259	66	11,533
1977	178,066	63,569	78	14,924
1978	260,016	90,232	84	19,135
1979	308,018	120,406	108	22,023
1980	367,497	150,662	132	24,214
1981	455,281	184,364	132	24,102
1982	521,823	212,929	144	28,113
1983	617,223	255,044	144	32,389
1984	700,839	288,495	144	43,362
1985	780,884	319,689	144	43,654
1986	905,439	362,102	144	56,497
1987	1,056,298	431,635	144	75,949
1988	1,235,792	528,350	144	125,604
1989	1,410,663 ^{p)}	619,031 ^{p)}	230	212,115

註 : 1) 1970년 이전계열은 1975년 기준년 개편계열임.

2) p는 잠정치임.

資料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년호.